

자동차 등 상속이전등록 절차안내



차량(자동차, 건설기계, 이륜차)소유자 사망 시 상속이전 또는 상속포기 등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. *근거[자동차등록령] 제26조 제1항 제3호

✓ 신고 기간

차량소유자가 사망한 달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
(단, 상속폐차의 경우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함.)

✓ 구비 서류

- ▶ 자동차 등록증,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, 기본증명서, 상속권자의 상속포기서, 상속자와 상속협의자의 신분증사본과 도장, (보험가입)
- ▶ 상속순위
① 직계비속, 배우자 ② 직계존속, 배우자(제1순위가 없는 경우)
③ 형제자매(제1,2순위자가 없는 경우)
- ▶ 상속순위자 중 미성년자가 있을때
미성년자 기본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, 법정대리인동의서, 인감도장, 인감증명서 각 1통.

✓ 신고 기관

- ▶ 군산시 차량등록사업소 ☎ 063-454-5786~7

* 위반 시 과태료 및 범칙금 부과[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1조 제2항]
(10일 이내에는 10만원, 11일째부터 1만원씩 추가되어 최고 50만원)
* 사망한 소유자의 자동차 운행시 운행정지 될 수 있음